

안전관리자의 자격·배치기준·임무(제41조 관련)

1. 안전관리자의 자격

구 분	자 격
종합유원 시 설 업	가.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산업안전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·건설기계기사·건설기계산업기사·기계공정설계기사·건설기계정비기사·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·일반기계기사·생산기계산업기사·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·전기공사산업기사·전자기사·전자산업기사·전기산업기사·자동차정비기사·자동차정비산업기사 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·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·전기·산업안전·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.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·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·전기·산업안전·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전기기기기능사·전기공사기능사·전자기기기능사·기계정비기능사·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·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·자동차정비기능사
일반유원 시 설 업	가.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산업안전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·건설기계기사·건설기계산업기사·기계공정설계기사·건설기계정비기사·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·일반기계기사·생산기계산업기사·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·전기공사산업기사·전자기사·전자산업기사·전기산업기사·자동차정비기사·자동차정비산업기사·전기기기산업기사·전기기기기능사·전기공사기능사·전자기기기능사·기계정비산업기사·기계정비기능사·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·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·자동차정비기능사 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·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·전기·산업안전·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

- | |
|---|
| <p>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·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·전기·산업안전·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</p> <p>라.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·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</p> |
|---|

2.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

- 가.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: 1명 이상
- 나.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: 2명 이상
- 다.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: 3명 이상

3. 안전관리자의 임무

- 가.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사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·비치하여야 하며,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다. 유기사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.